'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 일시 : 2022년 6월 9일(목) 19:00

■ 장소: https://youtu.be/foB6JhN9QYE

■ 주최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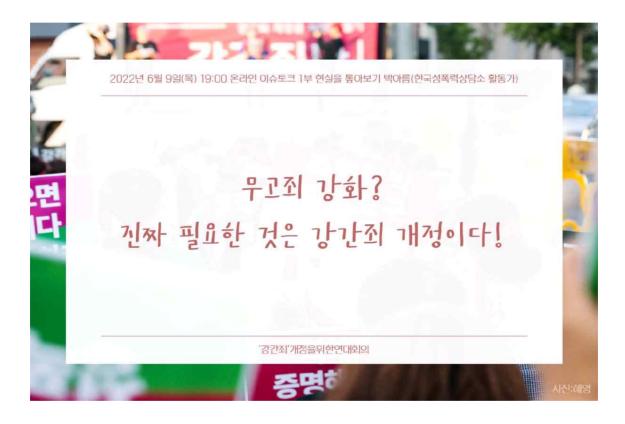
프로그램 목차

	사회 닷/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1부 / 현실을 톺아보기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_앎/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2
	성매매여성의 성폭력과 성폭력 무고죄 _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4
2부 /	성폭력범죄에서 무고죄 적용의 현실 _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
통계와 관점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움직임의 등장 배경 _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34
	질의응답	

1부 / 현실을 톺아보기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형번 제297조 가나<u>가</u>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무고조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

형법 제156조 무고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가가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 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기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 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 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 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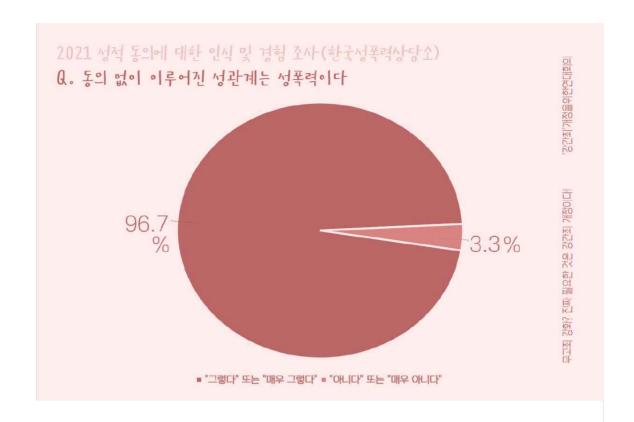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 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 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 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 <u>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u>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 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 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심 무죄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내심에 반하여 또는 설득에 못 이겨 마지못해 성행위가 이루어졌을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간죄는 '폭행·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죄'라는 인식은 상식?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강간죄 '개정을위한연대회의

구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게임하기 https://wonderful-law.korea.wtf 서명하기 https://wonderful-law.korea.wtf/result 무고질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회 개정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무고 역고소 피해 상담 사례 조사 2022. 5. 9. ~ 5. 20.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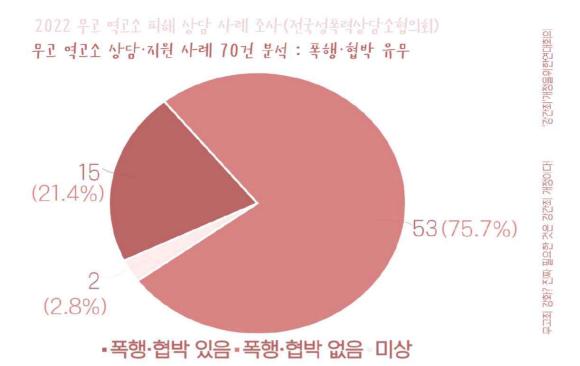
무고의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감간의 개점이

2018. 1. 1.부터 2022. 4. 30.까지 성폭력 피해 상담 중 무고 상담 횟수

2,146

전국 45개 성폭력상담소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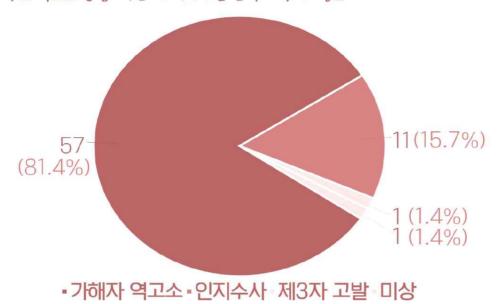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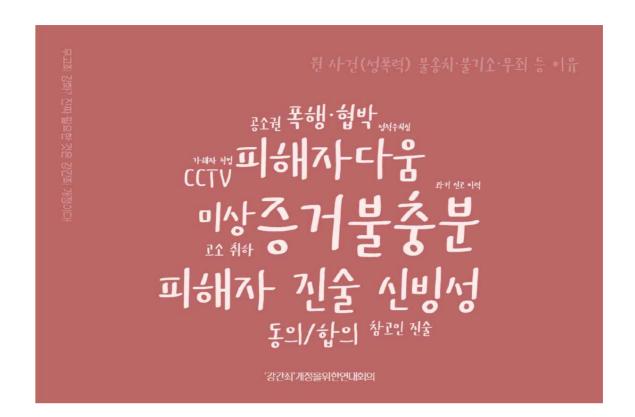
2022 무고 역고소 피해 상담 사례 조사-(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무고 역고소 상당·지원 사례 70건 분석 : 원 사건(성폭력) 결과

원 사건(성폭력)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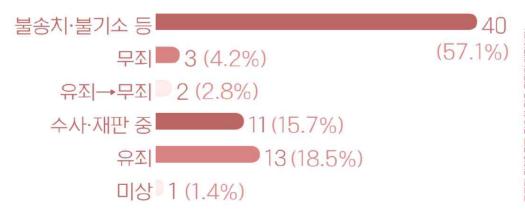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크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2022 무로 역군소 피해 상담 사례 조사(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무로 역군소 상당·지원 사례 70건 분석 : 무로 사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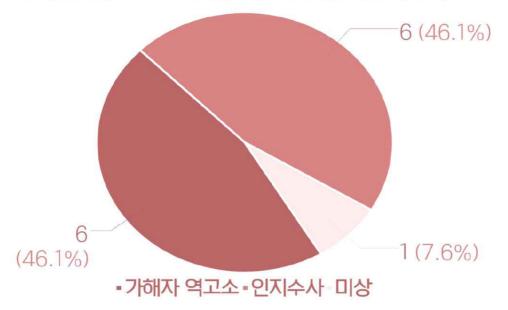
무고 사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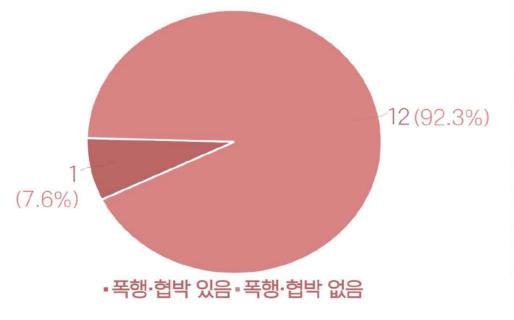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무고 역고소 상담·지원 사례 70건 분석 : 무고 유죄 13건 수사 경로



무고 역고소 상담·지원 사례 70건 분석 : 무고 유죄 13건 폭행·협박 유무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회 개정이

무단 유진 13개 야혀

지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 지역 8월 집행유예 2년

지역 8월 미상지역 6월지역 2년 벌금 70만원 지역 6월 집행유예 2년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생존자의 목소리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새벽 2시 반에 들었던 만장 일치 무죄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너무

하지만 집에 돌아오고 어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란 이름으로 불리는 걸 의 일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재판장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괴로웠습니다.

검사님은 심지어 제게 '피를 왜 수건으로 안 닦았 나, '삽입 못하게 왜 허리를 돌리지 않았냐'는 질문 을 했습니다. 수치심으로 눈앞이 흐려졌었습니다. 그런 참담했던 마음을 떠올리며 무고에서 벗어난 걸 기뻐하는 제가 초라했습니다.

(중략) 지금 저는 무죄를 받아 기쁘지만 이게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 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시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 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 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 <u>할 수는 없으며</u>,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폭력 무고야말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 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시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 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 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 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보복성 역고소? 무리!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 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 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 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면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성매매여성의 성폭력과 성폭력 무고죄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상에서 제일 쉽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바로 '성매매 여성'이다. 사회는 성매매 여성에게 고정된 이미지를 덧씌우고, 너무도 쉽게 손가락질 한다. 그들이 당한 폭력은 폭력이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는 폭력이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매매 여성을 더럽다며 욕하는 많은 이가 한편 '성매매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성구매 행위는 마치 권리처럼 들먹이면서 왜 여성들은 성매매를 한다는 이유로 '욕'먹어도 되는 이들, 함부로 해도 되는 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걸까?"1)

'성폭력 무고죄'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누구일까? 바로 성매매 여성들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1988년 12월, 대구에서 경찰관에 의한 다방 여성 종업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구 대현1동 파출소 경찰관 2명은 귀가하던 다방 종업원 강모씨를 강제로 파출소로 끌고가 성폭행했고 피해자는 바로 검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구속됐다. 가해자인 경찰관 2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방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사실은 의심받아야 했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고죄 싸움을 해야 했다. 이 싸움에서 피해자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성매매 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이었다. 그렇게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성매매 여성에게 무고한 경찰관을 위협하는 '꽃뱀'이라는 공격이 자연스레 이어졌다.

"대현1동 파출소 내 경찰관에 의한 집단 성폭력 사건"

"1988년 12월 5일 오후 11시경, 강○○(당시 29, 다방종업원)가 귀가길에 대구시 북구 대현1동 파출소 앞을 지나다가 이 파출소 백승근 순경(당시 29, 현 북부경찰서 근무)에게 강제로 끌려가 파출소 내 취사장에서 백순경과 김정부 경장(당시 49, 현 북부경찰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백순경을 강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맞서 백순경 등은 강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자하자 검찰은 강씨의 고소를 기각한 채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강씨를 무고혐의로 6개월 간 구속수감했다."(경향신문, 1991. 9.5)

"한편 대구시 북구 대현1동 파출소 이명호 소장은 ""술에 취한 여자를 보호해 주었을 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두 경찰관은 정상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대구지방법언 심장수 검사는 "현장 검증도 했는데 서로 이야기가 너무 달라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만 말했다." (한겨레, 1989, 1, 18)

"다시는 저 같은 여자는 없어야 합니다. 내가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직업을 가졌다고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사회는 잘못된 겁니다. 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한번 싸워 보렵니다." (사건 피해자)²⁾

¹⁾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2021), 『성매매경험당사자 무한발설』, 봄알람: 169쪽.

²⁾ 원출처: 대구여성회(1999). 『대구여성회 10년사: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성매매 여성에게 '성폭력'은 무엇일까?

성매매 여성의 성폭력 문제, 그리고 무고죄를 논하기에 앞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성매매 여성에게 성폭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업소 및 성매매 과정에서 무수한 피해를 경험하며 성매매 자체가 폭력으로 경험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돈이 지불된 강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과정에서의 모든 폭력은 정당화된다. 성폭력은 그 무수한 폭력들 중 하나이다. 다시, 성매매 여성들은 무엇을 성폭력으로 인지할까? 폭행, 협박이 동반되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는 분명 성폭력이다. 성매매 과정에서 '동의'는 돈을 주고받음의 동의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받지 못한 것은 강간으로 이해된다. 반면 '돈'을 받았음에도 폭행, 협박이 동반된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는 강간으로이해된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수사과정에서도 위 두 경우 모두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의 어려움은 강간죄를 현재의 폭행, 협박의 여부에서 '동의' 여부로 기준을 바꿀 때, 성 때매 여성에게 '동의'는 무엇이고 성매매 여성에게 강간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이다. '돈'을 받았다고 동의했다고 할 수 없다. 인신매매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에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된다. 피해자의 동의는 너무 쉽게 조작 가능하며, 취약한 조건에 처한 피해자는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동의'를 명시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성매매 역시 마찬가지다. 선택지가 없는 여성은 성매매에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의'했다고 성매매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성매매 자체가 여성을 비롯한 취약한 조건에 놓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경제적, 정서적 착취이자 학대이고 폭력이다.

그럼에도 오늘 성매매 여성의 성폭력과 성폭력 무고죄를 논하는 것은 성매매가 그 자체로 성적/경제적/정서적 착취/학대/폭력임에도 성매매 여성이 인지하는 '성폭력' 경험이 존재하며, 심지어 성폭력을 가장 많이 당할 것으로 예상 가능하지만, 가장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이며,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을 때 가장 많은 비난과 '무고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 성매매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 유형

성매매 여성에게 무수한 성폭력 경험들이 존재하겠지만,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단체의 경험이 근거하여 거칠게 정리하자면, 성매매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성폭력을 경험한다.

- 1) 매수자 : ①돈을 줄 것처럼 성행위를 하지만 성행위가 끝난 후 돈을 주지 않고 도망 감.
- ② 피해자가 거부했지만 폭행, 협박 등 강제로 성행위를 한 후 돈을 던져주고 감.
- ③ 꽁씹- 키스방, 대화방 등 위장(유사)성매매 업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함.

위장(유사) 성매매 업소에서의 성폭력 피해는 아주 높은 편이다. 위장 성매매 업소는 여성들에게 성매매가 없다고 홍보하며 여성들을 성매매에 유입시킨다. 반면 성매수자에게는 성매매가 가능할 것처럼 홍보하여 끌어들인다. 성매수자에게 위장 성매매 업소는 다종다양한 성매매 업소 중하나이며, "이 세계에 발을 처음 들인 순진한" 성매매 여성을 "공짜로 따먹을 수 있는" 판타지가 있는 업소일 뿐이다. 그래서 위장 성매매 업소에서는 NF(new face) 이벤트 같은 것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할 수 없다. 첫째, 업주는 이곳이 성매매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의 발생 여부는 오롯이 여성의 책임이라고 주장할 것이며, 둘째, 구매자

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며, 셋째, 위장 성매매업소에서 성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빈번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험한 것은 성폭력이 아니라 성매매일 뿐이기 때문이다.

2) 업주와 소개업자: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 처음 유입되면 업주 및 업소 관계자들은 "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성폭행을 하곤 한다. 성착취에 노출된 십대 여성들이 이런 성폭력에 자주 노출되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된 외국인 여성들도 자주 이런 형태의 성폭력을 경험한다. 물론 성폭력은 말을 잘 듣지 않는 성매매 여성을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 성매매 여성의 무고죄 사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지원했던 몇 가지 무고죄 사례를 모았다. 성매매 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상담소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무력함이다. 성매매 여성의 성폭력 사건이 얼마나 인정받기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며, 성폭력 피해가 인정도 받기 전에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것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 성매매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일부러 성폭력상담소로 연계하여 사건을 지원하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폭력 사건을 지원했을 때 수사기관이 사건 자체를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매매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본인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되더라도 가해자를 '성폭력'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 사건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성폭력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지어 피해자가 '무고죄'로 피의자가 되어처벌되는 경우도 많다.

사례 1.

피해자 A는 돈을 빌릴 생각으로 '건전 만남'이라는 키워드로 랜덤채팅하여 가해자 B를 만남. B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성행위 강요하고 A가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성관계 함. 이후 A가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고 조사받음. 같은 시기 A가 사기 피소되어 구속되었고 성폭력 사건은 검사에 의해 무고죄로 기소됨. 성폭력 가해자는 무혐의, 피해자는 무고죄로 1심 징역 6개월, 2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처벌받음.

사례 2.

피해자 C는 다방 종업원임. 배달을 나갔다가 가해자 D가 강제로 성관계 함. 강간 피해 후 C가 바로 112에 신고함. 신고 당시 경찰 태도 호의적이었고 D도 바로 체포되어 사건이 잘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다만 업주가 지역에서 손님 신고했다고 일을 못 하게 하여집에 돌아와 있는 상태였음. 6개월 후 본인 집에서 무고죄로 긴급 체포됨. D는 강간 무죄, 성매매 벌금형 받음. C는 무슨 죄로 조사받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받았고 공판 과정에서는 국선 변호사에게 반성문을 작성해야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고 들어 억울하지만 반성문제출함. 1심 징역 10월, 2심 징역 8월 확정.

사례 3.

조건만남으로 만난 가해자 E가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 F가 112에 성폭력으로 신고함. 경찰조사 과정에서 무고로 인지되어 무고죄 조사를 받게 됨. 상담소 지원과정에서 지적 장애가 의심되어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하였고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됨. 경찰과 검사에게

검사결과를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무고죄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벌금 2백만원 처분됨. 가해자 E는 벌금 50만원 처분. 상담소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정식재판 청구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나옴. -언어지능 67. "사건의 인과관계 및 전후관계에 대한 이해력이나 사회적인 민감성 불안정한 편. 상황에서 맥락을 읽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저조한 편"

사례 4.

성매매 없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가 손님 H에게 강간 피해를 당함. 업주는 해당 업소가 성매매 없는 업소라고 설명하며 손님이 성매매 요구했을 때 손님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잘 대처하라는 지시를 함. G가 H의 성관계 요구를 계속 거부하며 콘돔이 없다는 핑계를 댐. H가 웨이터에게 콘돔을 가져오라고 시킨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웨이터에게 20만원을 주고 떠남. G가 강간 피해 후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였으나 H가 합의를 종용하고 업소에서도 조용히 넘어갈 것을 종용하여 가해자와 합의함. 이후 경찰조사 때 경찰은 피해자가 듣는 상황에서도 "저거 꽃뱀이잖아,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고 성폭력 조사는 하지 않고 "성형수술 언제 하냐? 합의금으로 성형수술 하려고 한 것 아니냐?"등을 묻고 "뿌리치거나 잔을 깨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는 말을 함. 가해자 H는 강간 무혐의,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받음. 피해자 G는 성매매, 공갈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음.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성폭력 신고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성매매'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인지하여 사건을 성폭력이 아니라 성매매로 인지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성폭력이 아니라 성매매로 처분받고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 행위자 및 무고를 한 가해자로 둔갑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성매매 과정에 있었든, 성매매로 인지했든 관계없이 가해자는 성폭력을 성매매로 주장하며,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였다.

○ 성폭력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과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다

무엇이 '성폭력'인가? '성폭력'은 여성인권의 성장과 함께 '정조에 관한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 권을 침해한 죄'로 의미가 재정의 되었고 현재도 논쟁 중이다. 법적 정의는 여전히 폭행, 협박을 수반해야만 성폭력으로 인정되지만 사회적으로 성폭력은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너르게 인정되고 있다. 법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판결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성폭력' 규정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에 맞춰 법 개정 노력도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당연히 변화의 경계에 있게 된다. 사회적으로 너르게합의된 수준의 성폭력 규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피해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폭력신고도 하게 된다. 성폭력피해상담소의 70%에 이르는 상담이 이미 폭행, 협박이 없는 성폭력 사건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관행대로 폭행, 협박이 없었음으로 그래서 현재 법으로 성폭력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죄로 인지하거나무고죄로 처벌한다. 무고죄의 존재는 피해자를 또 다시 침묵하게 한다. 무고죄의 존재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무고죄 강화하자는 논의는 위험하다.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무고죄 강화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강간죄의 개정이다.

나아가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동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동의'가 피해자의 입을 막는, 결국 또다시 성폭력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귀결되는 '동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동의'가 무엇인지. 무엇을 '동의'로 볼 것인지 더 많이 말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동의'의 무력함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들이 있다. 너무도 다른 위치와 권력 을 갖고 있는데 각각의 개인을 평등하고 동등하다고 (허구적으로) 상정하고 그 사이의 계약과 동 의가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그래서 '동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치부해왔던 관행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이런 논리의 귀결은 상대적 약자, 그래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에 대한 책임 지우기다. 불균형한 구조를 만든 사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동의를 말할 때 동의가 가능한 조건을 함께 말해야 한다.

특히 성매매는 특정 집단의 '취약함'을 자원으로 한다. 취약함은 성별, 연령, 인종, 섹슈얼리티, 빈곤, 학력, 장애, 언어 등을 포함한다. 취약함은 피해자가 성매매에 '동의'하게 만드는 조건이 된 다. 성폭력 기준이 납작하게 '동의' 여부로만 규정된다면 성매매 여성은 여전히 성폭력 피해를 말 하지 못할 것이다. 첫째, 성매매에서 무엇이 '동의'인지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성매매라는 상황 에서 성매매 여성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이 성매매 여성의 선 택과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명시적 '동의'가 있어도 불평등한 구조/조건이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 생했을 때 무엇에 '동의'했는지 묻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발생한 폭력에 대해 가해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위해, 그리고 피해자를 충분히 지지하고 회복을 가능하게 위해 필요한 과 정이기 때문이다.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스스로 인정하고,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나 아가 성폭력 뿐만 아니라 성매매 경험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재해석하고 '피해자'로 인정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매매 여성에게 '동의'르르 묻는 것은 피해를 회복하는 힘 기르기의 일종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매매 여성의 입을 막고 있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 조항의 삭제 이다. 성매매를 정상화한 사회에서 이미 너무 많은 취약한 사람이 성매매 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성매매를 여성인권의 문제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정하고 사회를 탈성매 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고발과 책임 묻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의 침묵 깨기와 피해 인정이다. 성매매 여성 의 침묵을 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성매매 행위자'라는 처 벌의 위험 속에서 성매매 여성은 어떠한 폭력의 피해도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무고죄 강화가 아니라 강간죄의 개정이며, 이와 함께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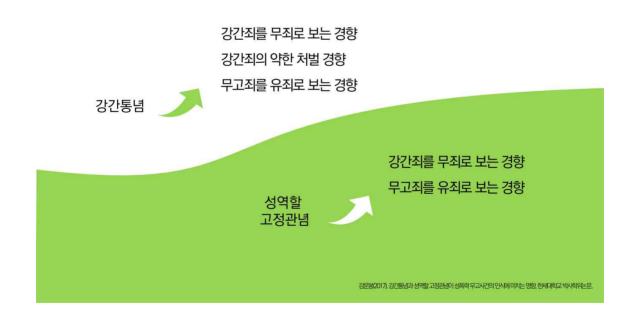
2부 / 통계와 관점

성폭력범죄에서 무고죄 적용의 현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범죄에서 무고죄 적용의 현실

김정혜 wiccee@gmail.com



성폭력의 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 특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 >>>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데 기여

성폭력범죄에서 무고죄의 활용

피해자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에 대한 보복 피해자를 침묵시켜 성폭력 처벌 회피

성폭력의 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 특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 >>>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데 기여



성폭력범죄 수사, 재판에도 작용

성폭력범죄 성립 부정 피해자에 대한 무고 의심, 무고 기소, 유죄 판결

대검찰청 성폭력무고 사건 처리 통계분석 개요

- 2017~2018 기간에 처리된 무고죄 단일범
- 원사건이 성폭력범죄인 사건
- 총 1,190명 사례 분석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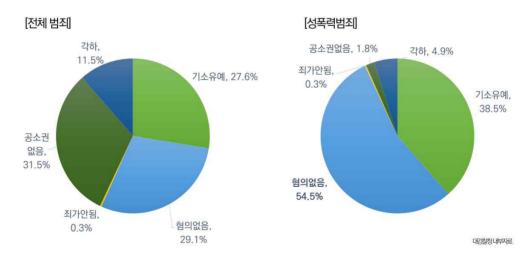
무고 경합범 제외

원사건의 범죄 종류 확인 불가능한 사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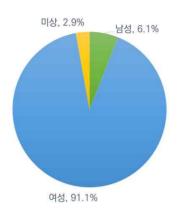
→ 해당 기간 성폭력무고 사건의 전수가 아님

이하통계분석에서 별도의 주석이 않는 지료는 다음 보고사에서 가져온 것임 윤덕경 김정희 천재명 김영미(2019),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11): 디자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범죄 불기소 이유



성폭력무고죄 피의자 성별



당사자 관계

[성폭력무고죄]

관계	평	%	
기타 아는 사람	153	12.6	
배우자/애인	131	10.7	
모르는 사람	102	8.4	
직장상사	73	6.0	
전배우자/애인	49	4.0	
고객	48	3.9	
미상	547	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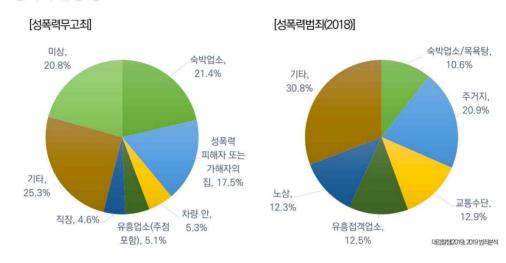
^{*3%} 미만집단생략(온라인통해알게된사이, 직정동료, 친구, 이웃, 기타기족, 친척, 친/의부)

[성폭력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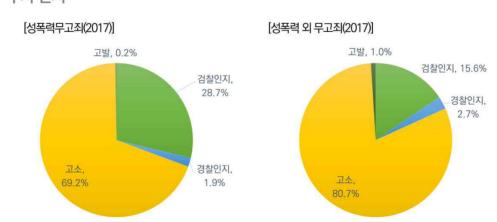
관계	명	%	
타인	18,427		
이웃/지인	2,527	9.4	
친구 등	2,148 1,068 779	8.0	
애인		4.0 2.9	
친족			
고용관계	605	2.3	
기타	1,266	4.7	

대검찰정(2018), 2018 범죄분석

성폭력 발생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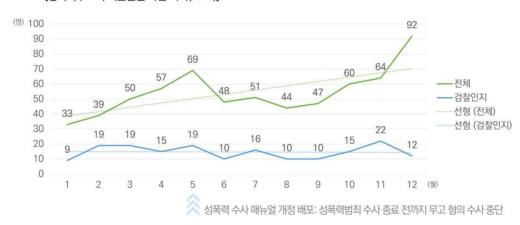


수사 단서



2018년 대검찰청 수사매뉴얼 개정 전후 성폭력무고 처리 건수 변화

[성폭력무고죄 처분월별 사건 처리(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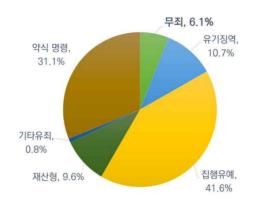
성폭력무고죄 수사단서별 처분

(명, %)

구분	기소	불기소	기타*	계
747-10171	307	14	9	330
검찰인지	93.0	4.2	2.7	100.0
75-01-1	19	8	3	30
경찰인지	63,3	26.7	10.0	100.0
	63	693	68	824
고소	7.6	84.1	8.3	100.0
745	0	3	3	6
고발	0.0	50.0	50.0	100.0
711	389	718	83	1,190
계	32.7	60.3	7.0	100.0

^{*}기타에는 타판이송,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시건송치 포함

성폭력무고죄 판결 결과



성폭력무고죄 수사단서별 판결 결과

(명, %)

구분		유죄					2	
	무죄	유기징역	집행유예	재산형	기타	약식명령	소계	계*
검찰인지	13	32	127	28	2	84	273	286
	4.5	11.2	44.4	9.8	0.7	29.4	95.5	100.0
경찰인지	0	2	3	3	1	10	19	19
	0.0	10.5	15.8	15.8	5.3	52.6	100.0	100.0
고소	9	5	21	4	0	19	49	58
	15.5	8.6	36.2	6.9	0.0	32.8	84.5	100.0

^{*}기소된사건중1심재판중0거나법원의소년부송치,결과를확인할수없는사례제외



성폭력무고 사건 판결례 검토

성폭력무고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모두 의도적 무고 사건일까? 성폭력무고 유죄 판결은 어떤 근거에서 무고라는 결론에 도달하는가?

시례A 대전자법 2019고단4446 시례B (1)인원자법 2019고단4526, (2)인원자법 2020도2615 시례C (1)인정부자법 2020고단6093, (2)인정부자법 2021도1117 시례D (3)대법원 2018도2614 시례E 전주점을 2020고단707

사례A



OO.O.(강간 시점) 이후에도 B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었던 점, OO.O.경 B에게 금반지를 사주었 던 점등 정황사실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가 합의 하에 간음행위를 한 적도 있었 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강간 시점)에도 피고인과 B의 합의 하에 간음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당사자 간 관계, 돈을 계속 빌려준 점, 선물, 과거 성관계 이력 등 성폭력범죄 판결에서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근 거로 제시되는 사항들을 무고 인정 근거로 드는 데 그칠 뿐, 강간이 아니라는 근거는 빈약함

사례B

[1심 유죄의 근거]

- 1. 사건 이틀 전에 당사자 간 유사성교가 있었음
- 2. 사건 전후 문자, 만남 횟수, 대화 내용, 분위기 등을 보면 사건 무렵에는 상당한 호감을 가진 사이였음
- 3. 사건 직후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등 호감을 가지는 사이에서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성폭행 직후 피해 여성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 4.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성교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만나 식사하고 차를 마심



1심 일부 유죄(집행유예) - 2심 무죄 - 3심 무죄(상고기각)

준강간이 문제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은 당사자 간의 관계, 성적 이력, 사건 후 행동(피해자의 전형에 부합하 지 않음) 등을 근거로 합의 성교로 판단하고 고소 중 1건에 대해 무고를 인정, 집행유예 선고.

통상 성폭력범죄에서 합의에 의한 성교로 의심하는 이유가, 이 사건 1심에서는 성폭력 무고 유죄 근거로 제시됨. 결국, 성폭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로 처벌될 가능성을 보여줌.

사례B

[2심 무죄의 근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이미 피해자가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였더라면 그에 동의하였을 것 인지 여부, 혹은 잠이 깬 피고인이 그에 응하였는지 여부, 즉 피고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이미 준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고의를 가지고 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 하고...

사례C



...·싱담소장은 "그것은 성폭력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나는 D로부 터 성폭력을 당한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피고인의 피해의식과 성폭력상담소장의 조언 이 'D의 행위는 성폭력이다'라고 피고인의 **사고 왜곡**을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어쩔 수 없어서, 거절할 수 없어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성관계에 응하였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불쾌했다', '역겨웠다'"며 감정 속으로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숨기면서 회피적이 고 방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속마음과 감정은 극히 주관적인 진술이어서 허위로 진술하 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그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의** 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과정에 D가 위력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제압하는 등

의 방법으로 간음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은 없으며...

사례C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 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 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 D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숨기고 진술하였고, 이는 실제 사 건 경위 및 D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중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단 순한 정황의 과장으로 볼 수는 없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숨긴 채허위의 진술을 하였 으며...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성폭력범죄가 성립되기 위해 폭행, 협박, 업무상 위력과 같은 강제력을 요구하는 법체계 하에서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교를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고소하면 '범죄 아닌 것을 범죄로 고소'한 무고 성립 가능성을 보여줌

사례D

대법원의 무고죄 판단 기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 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 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 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무고죄 판단 기준

사례D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 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 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 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 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진정 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 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D

[대법원 파기환송(무죄취지)의 근거]



...피고인이 입맞춤 등을 당하기 이전에 공소외인과 사이에 손을 잡는 등 다른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공 소외인의 유형력 행사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공포감을 느끼어 주변 에 도움을 요청하였는지 등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일순간에 기습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와 직 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 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 습추행이 있기 전까지 공소외인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입맞춤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례E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가 준강간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준강간으로 성관계가 시작되고,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의식을 가지게 되어 그 시점부터 성관계는 합의하에 계속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시작할 때 이미 성립한 준강간죄에는 영향이 없다...이 사건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여러 번 가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첫 번째 성관계도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례E



べ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 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기소,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발생함
- 대법원은 무고죄 판단에서 '신고가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고, 성폭력무고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에 의존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음

그렇다면, 성폭력무고 처벌법을 강화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

- 성폭력 통념을 반영한 하급심 판결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 성폭력 무고 엄벌을 표방하는 입법과 정책은, 성폭력무고 인지 수사, 성폭력 가해자의 무고죄 활용 증가에 기여할 것이며,
- 동의가 아닌 강제성에 기반한 성폭력범죄의 구조는, 성폭력피해자의 무고죄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법과 정책은, 무고죄 처벌 가능성만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침묵시켜 성폭력 근절을 저해할 위험에 주목해야 함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움직임의 등장 배경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움직임의 등장 배경

2022. 6. 9 추지현

문제제기

-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남성 주체와 젠더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하고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현상은 새롭지 않음. 예. "꽃뱀"
- 무고(誣告)죄를 이용하여 여성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의심, 묵살하며 무고(無告)하게 만들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

무고(無告) 「명사」 괴로운 처지를 하소연할 곳이 없음. 또는 그런 사람 무고(誣告) 「명사」 『법률』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 하거나 고발하는 일.늑장무, 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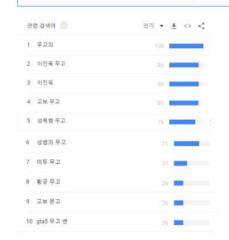
। 文(문)경장이 權(권)양을 상대로고소한 무고및 명예훼손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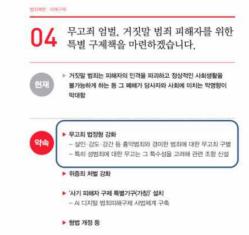
"무협의 처리할 방침이다.權(권)양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긴하나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무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이 강씨와 사건관련 경찰관 2명의 성병유무를 검사의뢰한현대기독병원은 "세 사람 모두똑같이 성병균의 일종인 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고 경찰쪽은"포도상구균은 누구에게나 발견될 수 있는 잡균"이라며고소인을"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제기

- 하지만 **무고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 시도 + 무고죄 논의가 **성폭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상 황은 역사적으로 보편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성폭력-무고죄-처벌강화입법, 이 계열화의 배경은?





1 성폭력 처벌 강화에 대한 대응

- 2000년대 후반, 아동 대상 성폭력을 기화로 법정형 및 부수처분 확대
- 2013년 6월,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의 상향 등 대대적 개정 입법 시행과 친고죄 조항 폐지
- 보호 가치 있는 피해의 선별, 검찰의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기조 천명
- "성폭력-무고"라는 프레임의 지속과 강화: 증가 vs (그간의 관행) 감소
- * 대검찰청 보도자료 배포

2013.4.23 서울중앙지검. "성폭력 사범 및 성폭력 피해자로 위장한 악질적 무고사범 수사 결과" 발표 2013.2.7 청주지검

2013 11 29 천안지청

2014.5.12 의정부지검, "처벌강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성범죄의 무고가 증가"

성폭력 고소율 ↓…'꽃뱀' 사라졌나?

성범죄 급증 불구 고소사건은 한 자릿수 하락 2013년 6월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크게 줄어 합의 관계없이 끝까지 수사... 악의적 이용 힘들어져

1 성폭력 처벌 강화에 대한 대응

성폭력-무고죄 프레임의 지속, 처벌 강화의 실제

- 강간 중심의 성폭력 통념에 부합하는 피해 중심으로 양형 강화 효과가 나타남
- 친고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그 유제로 인해(부수처분이 과도하다는 인식의 지속으로 인해)합의가 있 는 경우 검찰의 기소유예 증가
- 체계적 법률 조력의 대상으로서 성폭력의 구성과 법률 시장의 확대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সা		14.329	17.327	18.680	18.214	21.553	23.649	
기소		6,115 (42.7)	7.426 (42.9)	8,574 (45.4)	8,880 (48,8)	11.214 (52.0)	11.855 (50.1)	
불기소	소계	7,035	8,562	8,816	8,200	9,186	9,736	
		(49.1) (100.0	(49.4) (100.0)	(46.7) (100.0	(45.0) (100.0	(42.6) (100.0)	(41.2) (100.0	
	혐의 없음	1.697 (24.1)	2,225 (26,0)	2.215 (25.1)	1,979 (24.1)	3.255 (35.4)	4,993 (51,3)	
	공소권 없음	4,763 (67.7)	5.669 (66.2)	5.623 (63.8)	5.283 (64.4)	3.284 (35.8)	372 (3.8)	
	기소 유예	558 (7.9)	655 (7.7)	960 (10.9)	895 (10.9)	2,622 (28.5)	4,349 (44.7)	
	죄안됨	17 (0.2)	13 (0,2)	18 (0.2)	43 (0.5)	25 (0,3)	22 (0.2)	

09 "이대남"의 소환

- 박근혜 정부 이후 정부의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한 공식적 천명은 소강
- 단, #미투 운동의 확산과 함께 성폭력-무고죄 담론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안티페미니즘으로서 재부상 ☞ 지난 대선 공약의 자양분

구글 트렌드 "무고" 검색 결과



- 2018.2.22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8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 2018.7.19 청와대, 국민청원(무고죄 특별법 제정 요구) 답변

09 "이대남"의 소환

-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부상한 세대론과 남성중심적 청년 담론 - 삶의 불안정성 심화와 '공정' + 젠더 질서의 변 화에도 불구하고 대안적 남성성의 부재
- 젠더, 계층, 세대가 맞물려 만들어내는 불평등 구조의 진단 대신 '반/페미니즘'이라는 전선을 통해 성별 갈등을 극화 -청년 집단 내부의 다양한 차이를 성차로 환원
- 대선 과정에서의 적극적 "이대남" 호명(+학계, 언론)과 청년 남성들의 피해 의식 보상: 역차별(여성가족부 폐지, 상병수 당) 및 잠재적 가해자(무고죄 처벌 강화)

朝鮮日報

대선 표심 뒤흔든 '성범죄 불만'

[2022 젠더 라포트]

fence faci eliti

2

中口甲

상범죄에 대한 공포는 지난 대신 때 20대 여성들의 '용경 투표'를 낳았다는 본식도 있 다. '마번방 사건'을 계기로 창당한 '여성의당'에는 대신 직건 '박지현을 지키기 위에 대달이단우당에 투표하자'는 20대 당원들의 목소리가 끝아졌다. '예반》 사건을 피해 찬 '추적단 불꽃' 슬산 박지현 현 민주당 공동에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캠프에 함류 됐고, 국민의원이 '여기부' 회기' '무교회 경화' 등 20대 남성들이 주강하는 공약을 내 세우자 권락부표에 나섰다는 것이다.

선면 남성들은 성명되지로 불리는 불안값 남성 전체를 잠자적 가해지로 보는 시각에 크게 반발하며 보수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자난해 서울 부산시장 보험간에 이어 반대 단선에서 국민의회가 문석을 후보를 크게 지지한 이야다. 이란적 구인의의 대표는 지난해 기발 "남성은 점재적 가재자전 그래요!은 조산인이 무물에 독을 맞을 것이라는 선생, 전라도 비하 동과 다음 것 없다"고 주장해 20대 남성들의 최용을 얻었다. 순속성 대통령은 후보 시작인 지난 3일 "무고적 처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 대통령적인수위원화가 발표한 '윤석점 정부 110대 국정최제 에도 표원했다.

홍준표, '이대남' 노린 여성 정책?…"페미니즘 대신 패밀리즘으로"

g)# 3021-10-01 14:12

'이대남' 잡자고 '페미니즘' 때리는 정치권

거대양당 이어 정의당에서도 '남성 배켓' 문문… 실제 없는 '웨이나를 맞은 '영호 선동

金田県 73年 - 会会 2021の419.01

O 9 "이대남"의 소환

2021.7.6 유승민, 여성가족부 개편 공약 - 하태경, 이준석 지지 2021.7.7 이준석, 여성가족부에 젠더갈등의 책임 제기

2021.7.8 하태경, "586 여성만 보호한 여가부" 주장

2021,10.21 윤석열, 청년정책 공약.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 감…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 "강력범죄 무고 선고형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조정하고 성폭력처 벌법에 무고 조항 신설해 거짓말범죄를 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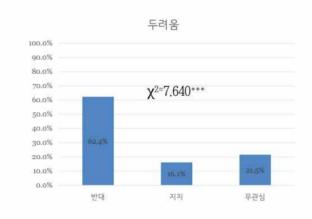
2022.1.6 윤석열, 페이스북 "여성가족부 폐지", 국민의 힘 2022년 대선공약집 공포

2022.3.8 윤석열, 페이스북 단문 공약 강조, "성범죄 처벌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2022.3.29 법무부,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에 적극 협조"

"이대남"의 소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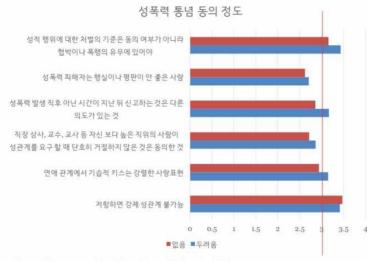
- 실제로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는 청년 남성의 62.4%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의 가해자로 지목될까봐 두렵다"고 응답
- "페미니즘 반대"의 목소리에 부응한 공약 제시



- 여성가족부의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2020) 자료 재구성
- 만 19세-34세 남성 3,435명
- 성별, 연령, 지역 층화하여 비례할당 표집
- 2020,10,17-11,4 웹조사

09 "이대남"의 소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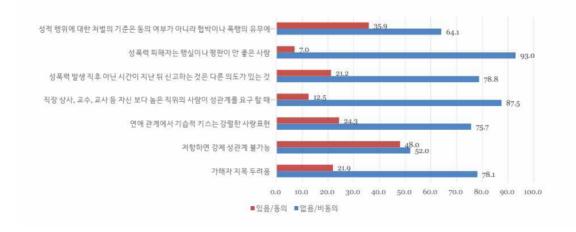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청년 남성들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동의가 아닌 폭행, 협박 중심의 성폭력 이해)를 더욱 수용



-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 마지막 항목을 제외하고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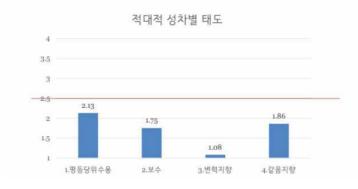
09 "이대남"의 소환

- 하지만…, 가해자 지목의 두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은 청년 남성의 21.9%, 나머지 78.1%는?
- 여성혐오(mysogyni)에 의존한 편향된 "이대남" 기표의 재전유 ☞ "젠더 갈라치기"(젠더를 둘러 싼 성별 갈등의 극화)라는 비판의 정당성과 디지털 담론 중심의 편향된 시대 진단



) 이 "이대남"의 소화

• "페미니즘" 지지 여부가 아닌 현행 젠더 관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청년 남성 집단을 유형화 하여 여성 일반에 대한 태도(성폭력 통념 이외에도 여성의 성폭 력 피해 주장을 기각하게 만드는 요인들)를 비교한 결 과 역시 마찬가지



- 성역할규범에 대한 태도 + 배우자에 대한 역할 기대 + '여성Women'에 대 한 이해(온정과 보호의 대상 + 경쟁 과 피해를 야기하는 적대적 대상) + 현재의 성평등 수준 인식 + 여성정책 에 대한 태도(동등 처우로부터의 차 별의 제거 + 여성의 참여 확대) 등 문 항을 토대로 잠재계층분석(Latent Profilie Anlysis)
- 평등당위수용(17.2%), 보수(20.8%), 변혁지향(14.2%), 같음지향(47.7%)
- 적대적 성차별 태도 측정:여성들은 별 뜻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을 성차별 이라고 주장한다 + 평등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 한다 + 여성들은 감정적이어서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 여성 과 직장 동료로 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직장에서는 여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 여성은 외모를 무기로 남성을 이용한다

정치의형벌화

- 무고죄 처벌 강화는 강력범죄 처벌 강화 및 그에 따른 무고죄 양형의 합리화 과정에서 수반된 것 이라 보기만은 어려움(vs. 아동학대,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와 기타 경미 범죄"-타인으 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특히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 단. 성폭력 처벌 강화에 대한 일각의 불안을 위무하는 것 이외에도 "거짓말 범죄" 척결의 정당성 에 의존
- "거짓말 범죄"? (vs. "민생치안", "민생범죄", "생활밀착형 범죄")
 - 110대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 (무고·위중·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 개선 검토,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 적극 대응 및 피해자 구제 강화

정치의 형벌화

- "거짓말범죄": 언론 및 검찰의 관행화 된 정의 없음. 2009년 이후 간헐적으로 등장
- 무고, 위증, 범인도피 등 국가적 법익 침해에서 무고, 위증, 사기 등 사회적 불신이 초래하는 범 죄로 확장되어 논의되는 경향

2009.7.5 뉴시스

^낚짓 증언이나 거짓 고소로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거짓말범죄<mark>가 좀처럼 줄지 않고</mark> 있다. 올 상반기 범인도피나 무고. 위증 등 3대 거짓말범죄와 연루돼 광주지검에 적 발된 사례만 103건에 132명으로 2년 전보다 건수는 47.1%, 인원은 67%나 증가했다.

수사기관의 인지율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여전히 수사력 낭비와 재판 방해, 소송 지 연의 주된 요인인 거짓말범죄가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 적인 예로도 해석된다

'거짓말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 감정이나 원한에 따른 허위 고소나 학연 지연 등의 인간관계로 부탁을 받아 허위 증언하는 사례, 피해자가 가해 가를 측은하게 여겨 거짓증언하는 온정주의적 위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원지검 작년 131명 적발

거짓된 진술이나 허위내용의 고소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이른바 '거짓말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2.2.9 경기일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무고사범 78명, 위증사범 53명 등 모두 131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 늘어나는 3대 거짓말범죄 찰청에 접수된 사기 무고 위증 등 3대 거 짓말 범죄는 총 47만6806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전년(42만2169건)보다 12.9% 주가했고 2017년/38만2773건(과 비교하 며 24.6% 늘었다. 목해 1~8월 3대 거짓막 범죄는 31만6990건이 접수됐다. 무고회 기소율은 2016년 21.1%에서 지난해 116%로 떨어졌다. 근거 없이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고소가 많아졌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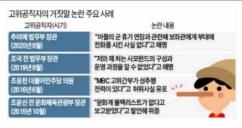
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무고죄를 걸어 상 대방을 압박해 고소를 취하시키려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행위가 사회 전반의 신 뢰 수준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0.10.17 모바일 한경

9 정치의 형벌화

- 국정과제로 예시된 범위(무고, 위증, 사기 "등")는 매우 모호: 공무원자격사칭, 범인은닉, 증거인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문서 및 인장 위조, 명예훼손 등, 범행 수법으로서 거짓말은 특정 죄명에 국한되지 않음 🖙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 선거 국면에서는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엄벌 대상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그에 대한 무고 로까지 확장하는 경향 조정치에 대한 검찰 개입의 정당성 부여 기제
- false speech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강화와 개입 범위의 선별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 사법적 결정 ↔ 정치적 영역)와 정치의 실종, 무고죄는 문제제기는 물론 그 제약의 양검





가치 없어"

유석열 김웅 상대 명예훼손 고소인 조사 "공익 신고 무고, 모욕 중대한 범죄 행위"

03 정치의 형벌화

• 2016.1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4646호), 홍철호의원등10인,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등의 선거 시 선거와 관련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u>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u> 저해되고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사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허위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u>근본적인 대책 마련</u> 차원에서 공표뿐만 아니라 <u>고소·고발인 등의 행</u>위 자체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검사가 피고인의 해당 혐의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때에는 원고인(고소·고발인)에 대하여 무고혐의가 있는지 의무적으로 수사하도록 함"

03 정치의 형벌화

[참고]

- 2016.12.20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200481호), 정춘숙의원등11인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 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를 규 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성(性)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입증을 위하여 증거로 채택하거나 이를 기초 로 신문할 수 없도록 함
- 2018.4.17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2013099호), 최경환의원등11인
-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강간시도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죄의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내포
- 「형법」상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정도'로 완화

03 정치의 형벌화

[참고]

- 2019.10.3. 형법일부개정법률안(2023322호), 김병기의원등11인, 임기만료폐기
- 무고의 형벌을 무고한 바의 죄에 해당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
-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그 형의 상한선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함으로써, 무고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 설정
- 2009.4.23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1804664호), 최병국의원등17인, 임기만료폐기
-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어서 대다수 무고한 피고소·피고발인의 인권침해가 심각, 국가의 부당한 사법권 행사에 의하여 일단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로 취급받아서 수사의 대상이 되면 그가 구속되었는지 여부와 기소여부에 불문하고 그 개인은 사회적·정신적 및 경제적으로 많은 손상과 피해. 형사보상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려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나 불구속 수사를 받아 불기소처분된 피의자도 그 수사나 기소가 수사기관이나 고소·고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기인한 때에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나가며

1.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배운 것

- 무고죄 처벌 강화가 어떻게 "성범죄 근절"과 양립가능한가?
 - 처벌 강화 제도가 엄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왜곡된 성폭력 통념과 이에 터한 사실 인정, 법리 적용의 극복이 핵심
 - 이성애-남성중심적 섹슈얼리티와 현행 젠더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 무고한 무고죄 적용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더욱 요청됨 ☞ 폭행, 협박 중심의 성폭력 판단 및 동의와 강제라는 인간 행위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틀 제거
 -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무고죄 처벌 자체도 어려울 것 + 형사법적 해법 만을 반복할 경우의 난제들: 절차상 피해자 소진, 피해 회복의 지연, 절차 종료 이후 피해자 삶에 대한 무관심과 명예 회복의 어려움, 전략적 봉쇄 소송의 동원, 죄명 중심 법정형 강화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누락과 칸막이 정책 초래 등

나가며

2. 성폭력-여성-무고 담론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언설과 실천들에 대한 개입

- 현재 청년 남성의 47.3%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부터 "남자가 실수로라도 성폭력을 했 다가는 인생 망한다"는 말을 들어봤다고 응답함[앞서 자료]
- 성폭력 처벌 강화 + 여성의 무고라는 쌍이 함께 움직이면서 만들어진 것 여전히 지속되 고 있는 정책 개입 프레임
- 여성을 섹슈얼리티를 피해와 무고의 원천으로 구성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 성원으로서의 동등한 지위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예. 정당정치에서의 활용 전술)
- 미소지니를 정치의 자양분으로 삼는 선동에 대한 비판 지속 필요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청년정책이라며 무고죄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그것도 성폭력 특별법에 신설하겠답니다.

법무부는 인수위원회에

무고죄 강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으로 고소고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왜 '청년' 정책이 된 것일까요?

성폭력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해 온

수사와 재판과정의 기준은 무고죄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궁금한 것을 모두 사전 질문하시면, 패널들이 속시원히 이야기 나눕니다.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 둘 다 놓치지 않고 짚어보겠습니다.



사 회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때 널

1부 - 현실을 톺아보기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부-통계와 관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유튜브 중계로 진행됩니다.
-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준비 예정입니다.

일 시

2022년 6월 9일 (목) 19:00

참여방법

사전신청 링크

https://bit.ly/강간죄개정연대이슈토크 자료집, 유튜브 링크는 사전 공유 예정입니다.

신 청 비 무료

-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자율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 * 강간죄 개정연대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 - 102 - 778031
 - 예금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주최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문의** | 02-338-2890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자료집

주최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일시 _ 2022년 6월 9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카이빙 블로그 https://change297.tistory.com/